

---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 '20.10.9(금) 05:00 ~ 10.11(일) 05:00(48시간), 돼지농장 등 -

---

2020. 10. 9



농림축산식품부  
구 제 역 방 역 과

# ❏ **목 차** ❏

I. 운영 개요	1
II.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	3
III. 이동승인 운영요령	4
IV. 이행상황 점검계획	5
V. 향후 추진계획	6
참고 1. 중앙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7
2.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	8
3. 농가 방역수칙	17
4. 이동승인 신청서	18
5. 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증명서	19
6.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20
7. 점검표 및 확인서	21
8.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결과 집계표(지자체)	28
9.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결과 집계표(검역본부)	29
10.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결과	30

# I. 운영 개요

## 1. 목 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의 명확화
-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축산관련 시설별 방역준수사항 시행 및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 증대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등 강력한 대응

## 2. 적용기간 : '20.10.9일 05:00 ~ 10.11일 05:00(48시간)

- ※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 일시이동중지는 2020.10.9. 0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0.10.9. 07:00부터 실시

## 3. 적용지역 : 경기, 강원

## 4. 대상 :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약 62천개소

- 돼지농장 1,260여개소, 도축장 15개소, 사료공장 16개소, 축산차량 61천대 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축산농장의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li><li>○ 축산 관련 작업장의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li></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축산농장 : 돼지 사육농가</li><li>*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li><li>*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 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 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축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li></ul> |

## 5. 전파 방법

□ (농식품부)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표

□ (검역본부)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돼지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

\* 돼지 사육농가 1,260여개소, 도축장 14개소, 사료공장 16개소, 차량운전자 61천명 등

□ (대상 시·도 및 시·군)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계속)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게재(10.9일)

○ 돼지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 대해 사전에 기초 정보(이름, 핸드폰 등)를 확보

□ (농협·생산자 단체·협회)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사항 전파

○ 대상 : 농협중앙회(회원조합), 대한수의사회, 대한한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

\* 특히, 도축·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기자재 등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

## II.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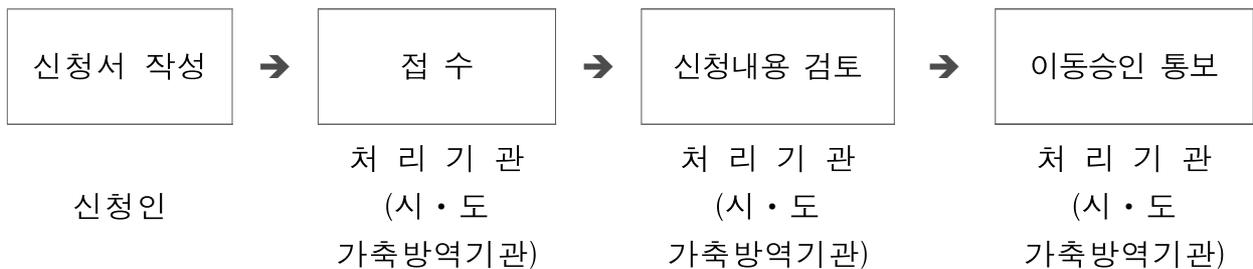
---

- (축산농가) 농장에서 사용하는 축산차량 등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 주변지역,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
  - 농가 내 구서, 쥐구멍 차단 등 외부 발생요인 유입 예방 철저
-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 (축산관련 차량) 차량 GPS부착 및 항시 전원 ON 유지
  - 축산차량 외부의 바퀴, 흙받이 및 차량 내부의 운전핸들, 발 매트 등점 세척·소독하고, 차량 전체 내외부를 세척·소독 조치
  - 축산차량은 해당지역 모든 돼지 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이 금지되므로 운행을 중지, 소속 공장(회사)으로 이동하여 세척·소독
-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 철저한 소독
- (농협) 공동방제단 동원하여 소규모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
- (지자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단속, 고발조치

### Ⅲ. 이동승인 운영요령

#### 1. 이동승인 신청

-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 제출



-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이동승인시 ①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②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는 요건 확인

#### 2. 이동승인서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 발급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참고 6)

-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등의 경우
-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는 경우
-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 IV. 이행상황 점검계획

---

### 1. 점검 개요

배 경 : 돼지농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점검기간 : '20.10.9(금) 05:00 ~ 10.11(일) 05:00(48시간)

점 검 반 : 13개반 26명(검역본부 13, 방역본부 13)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점검대상 : 경기·강원

\* 다만, 돼지농가 및 사육두수가 소규모인 시·군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점검대상 수 조정 가능(이에 따라, 점검반 현황도 변경)

○ 돼지 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작업장 등

### 2. 점검 내용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등의 이행실태\* 전반

\* 지자체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등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 축산차량 통제, 운영인력 적정,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 등

농가별 방역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및 소독 실태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등 여부

### 3. 협조 사항

(방역감시과) 점검반 편성(10.9), 점검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10.9~10.11)

## V. 향후 추진계획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20.10.9일 05:00
- 중앙 점검반 현장 점검(10.9~10.11, 명령기간 중)
  - 시·군·구별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 확인 및 지도
-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방역대책 상황실 비상체제 유지
  - 시행 전, 각 지자체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 확인 및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 안내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결과보고(종료후)
  - 지자체, 농협중앙회, 협회 등 이행실적 농식품부 제출
    - 농가, 지자체별 주요 조치사항, 중앙 점검반 추진상황 등

# 참고 1

## 중앙 합동 점검반 구성현황

□ 점검지역 : 2개 시도, 41개 시·군 대상 점검반 13개반 26명

시도	시군	검역본부			방역본부		
		직급	성명	휴대폰	직급	성명	휴대폰
경기도 23개 시·군	1김포,파주 고양	공중방역 수의사	정제용	010-5466-1910	7급	장영진	010-9215-7303
	2연천,포천, 가평	수의주사	윤소연	010-2745-2145	7급	오성우	010-4923-6197
	3양주,의정부 ,동두천	수의주사 보	김효빈	010-9168-6878	7급	김선웅	010-3392-8460
	4남양주,구리 ,하남	수의주사	임일수	010-9773-5234	7급	박용현	010-4372-8720
	5여주,양평 이천,광주	수의사무관	이현식	010-5251-9189	6급	이장희	010-6417-8338
	6안성,용인, 성남	수의주사	최지희	010-9607-1750	7급	이용재	010-9124-8369
	7화성,오산, 평택,수원	공중방역 수의사	이한슬	010-5627-8649	7급	김정수	010-4949-6308
강원 18개 시·군	8철원.화천. 양구	수의주사	전영호	010-9283-6542	6급	남궁민식	010-2797-3322
	9고성.속초. 인제.양양	공중방역 수의사	정지용	010-2031-5224	7급	김은비	010-4164-5650
	10춘천.홍천	공중방역 수의사	유지수	010-9252-6500	7급	오승민	010-4010-3125
	11원주,횡성, 영월	수의주사보	은길수	010-5259-2893	7급	정성진	010-9376-1087
	12평창.강릉. 정선	수의주사	이재오	010-9081-7321	6급	이주철	010-9057-6642
	13동해.삼척. 태백	공중방역 수의사	김민석	010-4757-0041	7급	이재현	010-8011-9793

\* 점검반은 축산시설이 많은 곳 위주 2개 시군 이상 점검

\*\* 점검반은 변경될 수 있음(협의후)

## 참고 2

##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

주체별	주체별 역할														
축산농장	<p>□ 축산농장이라 함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p> <p>①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하며 농장의 내·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p> <p>②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4 : 이동승인 신청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청 흐름도 &gt;</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서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내용 검토</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이동승인 통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td> </tr> </table> </div>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내용 검토	→	이동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처 리 기 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 종사자	<p>□ 축산관련 종사자라 함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 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p> <p>① 축산관련 종사자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p>														

<p>축산관련 작업장</p>	<p>□ 축산관련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 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을 포함한다.</p> <p>①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p> <p>② 분뇨차량, 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예 시 &gt;</p> <p>① 생축 운반차량은 명령 발동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p> <p>② 사료운반 차량은 명령 발령 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p> </div>
<p>농림축산 식품부</p>	<p>□ 관계 기관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도), 경찰청, 국방부 등) 행동요령을 총괄 지휘한다.</p> <p>① 이동중지명령 발동 후 동 명령기간 동안 이행점검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p> <p>②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 비상체제를 24시간 운영 및 대응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한다.</p> <p>③ 명령 발동 이전, 지자체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을 안내한다.</p> <p>④ 명령 발동 이전 시도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p>

	<p>⑤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p> <p>※ (기간) '20.10.9일, 05:00부터 '20.10.11일 05:00까지(48시간)</p> <p>※ (대상) 돼지 농장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축산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명령 발동 기준 &gt;</p> <p>①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이동중지 기간 중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농장(돼지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차량 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역학 관련 농장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 활동과 지방자치 단체의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동 중지를 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p> </div> <p>⑥ 중앙 합동점검반 편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실태에 대해 점검한다.(14개반 28명 구성)</p>
<p>농림축산 검역본부</p>	<p>□ 중앙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각 시·군·구의 주요도로 및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퇴비공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p> <p>① 중앙 합동점검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 센터의 인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관으로 구성한다.</p> <p>②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는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차량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검색 권한을 사전에 부여한다.</p> <p>※ 또한, 시·도가 가축전염병의 확산 예방 및 국민 안전을</p>

	<p>목적으로 차량 정보 열람이 가능함을 지도·교육</p> <p>③ 지자체의 점검과는 별도로 돼지관련 축산시설, 축산 농가에 대한 차량 출입여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점검하여 지자체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한다.</p> <p>※ 동 명령발동기간 중 축산관계시설, 주요 농가 등을 기준으로 KAHIS 출입내역을 조회한다.</p> <p>④ GPS 차량 및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 대해 이동중지 발령 전과 발령 후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SMS(문자), SNS 등을 이용 하여 홍보한다.</p> <p>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p>
지자체	<p>□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 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상황별로) 농식품부에 보고한다.</p> <p>※ 거점소독시설은 의사환축이 발생한 시·군 등에 설치 및 운영하고 명령 발동 이전에 지자체(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 등을 통해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p> <p>① 지자체(시·도)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농가, 축산관계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가축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p>

< 점검 방법 >

① 주요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여부, ②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출입통제 여부, ③ 축산관련 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 이동중지·출입통제 여부, ④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붙임 4의 이동중지 이행점검표(이하 “이행점검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조항에 따라 조치

②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축산차량 GPS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토록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결과,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

④ 지자체(시·군)은 중앙합동점검반에서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통보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하여 고발 등 조치토록 한다.

⑤ 지자체(시·도)는 관할지역의 국방부 및 경찰청에 동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등에 대해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 등을 구성한다.

※ 관할 지역의 경찰 및 군인 인력 동원 등 원활한 협조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필요시 협조를 구한다.

	<p>⑥ 지자체(시·도)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p> <p>⑦ 지자체는 중앙 점검반 요청 시 각 관할 소재의 축산관계시설, 축산농장,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시설)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p> <p>⑧ 지자체는 점검반 요청 시 단속된 축산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GPS 설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p> <p>⑨ 동 명령 발령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시설 근무자의 근무태세를 재정비하고, 방역복·비닐장화 등 방역물품에 대해 재확인 한다.</p> <p>⑩ 지자체는 각 거점소독시설 설치된 소독기 분사상태, 방역차량 등에 대해 재정비한다.</p>
<p>시·도 가축방역 기관</p>	<p>□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등)은 이동중지 예외 대상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처리한다.</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참고 5와 같이 정해진 경우에 신청인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승인한다.</p> <p>②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 중지 대상제외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참고 4 : 이동 중지 대상 제외 승인서)</p>

	<p style="text-align: center;">— &lt; 예외 규정 &gt;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li> <li>②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li> <li>③ 해당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li> <li>(2)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li> <li>(3)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li> <li>(4)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다만,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li> <li>(5)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li> </ul> </li> <li>④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는 경우</li> <li>⑤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경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하고 축산차량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단속한다.</li> <li>①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관할지역의 경찰청에 사전 협조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li> </ul>

	<p>② 이동중지 이행여부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p>
국방부	<p><input type="checkbox"/>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한다.</p> <p>①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관할지역의 국방부에 사전 협조를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p>
농협 중앙회	<p><input type="checkbox"/>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이전 및 발동기간 중 축산농가 등에 대해 소독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한다.</p> <p>①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축협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에 대한 일제히 소독한다.</p> <p>② 소속 회원, 및 축산농가, 축산관련시설(사료회사, 분뇨 처리업체 등)에 동 실시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p> <p>③ 농협중앙회는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p> <p>④ 농협중앙회는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명령 위반에 대해 발견 시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에 신고토록 한다.</p> <p>☎ 신고(GPS 관련 문의) 전화 : 검역본부(방역감시과) 또는 관할 지자체(방역부서)</p>
생산자 단체	<p><input type="checkbox"/>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p> <p>※ 관련 협회 : 한돈협회</p> <p>① 소속 회원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발동기간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p>

	<p>(1)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p> <p>② 각 협회는 농가 대상 홍보실적(SMS 등)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p>
계열사	<p>□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p> <p>※ 대상 계열사 : 해당 돼지 계열회사 (계열농가, 계열도축장을 소지한 계열사 포함)</p> <p>① 소속 계열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발동기간 중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p> <p>(1)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p> <p>(2) 특히, 계열 소속 농가가 명령 위반(예외 승인서 발급 제외) 시 해당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평가 등에 반영한다.</p>
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	<p>□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하여 명령발동기간 중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사항에 대해 홍보한다.</p>

### 참고 3

## 농가 방역수칙

- 1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
-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3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 4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특히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 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금지
- 5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고 지체 없이 방역기관에 신고
- 6 발생지역 농가는 돼지 분뇨를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 7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등을 깨끗이 세척하고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귀가 후 세탁, 목욕을 한 후 타농장 방문을 자제
- 8 쥐,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축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구서작업 및 축사외부 울타리 설치
- 9 발생지역에서 방역기관 허락 없이 불법 반출한 돼지의 구입 및 이동을 금지하고 방역기관에 신고

## 참고 4

# 이동승인 신청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이동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구분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청사항	이동사유		
	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방문장소(경유지 포함)		
	이동 방법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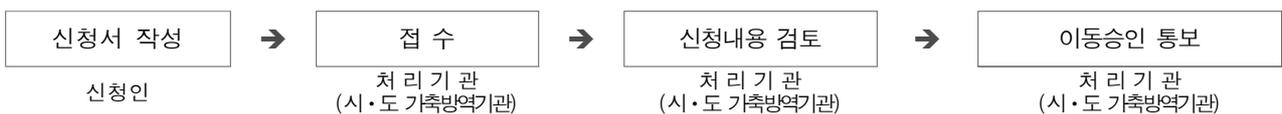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5**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대상제외 승인증명서**

제 0000- 0호

- 1. 대상명:
- 2. 승인 일시:
- 3. 승인 사유:

상기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일시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승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 가 축 방 역 기 관 장인**

## 참고 6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1.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 ①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 ②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 ③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 ④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 다만,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
  - ⑤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
4.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는 경우
5.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농가 점검표

점검일시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축종		사육두수	
<p>[점검사항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p> <p>① 농장주 및 가족이 이동한 적이 있는지 여부</p> <p>- 있음 ( )      없음 ( )</p> <p style="margin-left: 20px;">*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p> <p style="margin-left: 20px;">*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물 출입여부 파악</p> <p>- 기재사항 :</p> <p>② 가축을 입식하거나 출하한 적이 있는지 여부</p> <p>- 있음 ( )      없음 ( )</p> <p style="margin-left: 20px;">* 있을 경우 가축을 입식한 농장 정보 및 도축장 명칭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p> <p>- 기재사항 :</p> <p>③ 농장 소독 실시여부</p> <p>- 있음 ( )      없음 ( )</p> <p style="margin-left: 20px;">*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농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농장 소독여부 판단</p> <p>- 기재사항 :</p>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차량 확인서

점검일시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업 종		차량번호	
<p>[위반사항 확인내용 기재]</p> <p><input type="checkbox"/>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은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을 위반시 확인서 징구 조치</p> <p style="margin-left: 20px;">* 검역본부에서 기조사한 GPS 등록차량 중 미 운행 차량을 점검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및 부 적정 운영 확인 시 적발</p> <p><input type="checkbox"/>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 징구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위반내용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른 처분(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p> <p>&lt;확인 사항&gt;</p>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확 인 서

<농장, 업체 등>

상호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2020년 월 일 시경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점검반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추진 실태 점검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 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위반사항 >

- 
- 
- 

20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8**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지자체)**

전파 방법		시도	00 도(시)	
		일자	10.9~10.11	
		시간대	10.9일~10.10일 05:00 ~ 05:00	10.10일~10.11일 05:00 ~ 05:00
마을방송(횟수)				
SMS 전송 (횟수, 1인 기준)				
이동중지/ 이동제한 명령위반 (건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축산시설 방문한 축산차량(건) (KAHIS 상 점검 )				
임시 통제초소 설치개소수				
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건)				
축산농가 점검(건)				
축산관계시설 점검(건)				
가축시장(건)				
소독 등 방역실태 위반	농가			
	축산시설			

## 참고 9

## 일시 이동중지명령(10.9~10.11) 이행 결과 집계표(검역본부)

### □ 중앙점검반 점검실적

시도	시·군 (개소)	양돈농가	도축장	그 외 축산 시설	이동통제 초소	거점소독 시설	위반	지도
소계	0	0	0	0	0	0	0	0

확인서 징구 세부내역 :

### □ KAHIS 활용 홍보 현황

구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10.9~10.11		누계
	10.9일~10.10일 05:00 ~ 05:00	10.10일~10.11일 05:00 ~ 05:00	
대상(개수)			0
SMS/MMS 발송(건)			0
지자체 축산차량 KAHIS 조회권한 부여*	-	-	0

\* 시군 담당자 KAHIS 조회 권한 승인은 시도 담당자가 처리, 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 담당자 권한 승인은 검역본부에서 처리

**참고 10**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협회 등)**

농협중앙회

전파 방법	시도	농협중앙회	
	일자	10.9~10.11	
	시간대	10.9일~10.10일 05:00~05:00	10.10일~10.11일 05:00~05:00
주요도로 소독(개)			
소규모 양돈농가(개)			

생산자단체

전파 방법	시도	한돈협회	
	일자	10.9~10.11	
	시간대	10.9일~10.10일 05:00~05:00	10.10일~10.11일 05:00~05:00
소속 회원 농가(개수)			
전체 홍보(건)			
SMS/MMS 발송(건)			